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64 발의연월일: 2022. 8. 16.

발 의 자:이종성・김예지・류호정

서일준 • 서정숙 • 이상헌

이용호 · 정운천 · 조경태

하영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, 장애인의 관광 지 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,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러나 실제 유원시설업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고, 이를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 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

미국이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,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놀이기구 안내책자 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음. 이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·제작된 유기시설 및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5절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3(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) ① 유원시설 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업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·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유기시설등"이라 한다)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기 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장애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이해당 장애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4조의3(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)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업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·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유기시설등"이라 한다)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유기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